

통보

(단체 이름) _____ 은/는 프로그램, 서비스 또는 활동의 허가, 이용 또는 운영에 있어서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. (단체 이름) _____ 은/는 채용 또는 고용 관행에 있어서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.

통보는 1990 년 미국 장애인법(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)의 제 II 편에 따라 제공됩니다.

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거나 항의하시려는 경우, 또는 ADA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시려면 (단체 이름)의 지정된 ADA 준수 담당 조정관(ADA Compliance Coordinator)에게 하시면 됩니다.

이름: _____

직책: _____

사무실 주소: _____

전화번호: 음성 _____ TDD _____

이용가능한 날짜/시간: _____

(단체 이름)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ADA 준수 담당 조정관에게 필요와 선호 사항을 알리도록 하십시오.

이 통보는 ADA 준수 담당 조정관으로부터 큰 글자로 인쇄된 인쇄물, 오디오 테이프 및 점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제 II 편 - 공공 서비스

주정부와 지방 정부는 자격 있는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. 신축 또는 개축되는 시설들은 반드시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. 기존 시설들은 1973 년 재활법(Rehabilitation Act) 제 504 조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이용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.